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호	535
-----------	-----

2023년 3월 7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안일자 : 2023년 2월 6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라. 상정일자

- 제316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2023년 3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도시교통실장 윤종장)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조정하여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현행 조례는 물류정책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행정1부시장이 맡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함(안 제3조 제2항)
- 당연직 위원 수를 8명에서 6명으로 축소함(안 제3조제3항)
 - 당연직 위원에서 행정1부시장, 환경기획관, 정책기획관을 제외하고 경제일자리기획관을 추가
-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성별 균형 참여 규정을 일부 반영함(안 제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1. 10.~2022. 11. 30.
- 제출의견 : 의견없음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하고 행정1부시장이 맡고 있는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는 한편 당연직 위원 수 축소 및 위촉직위원 확대를 통해 물류정책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균형참여 규정 반영(안 제3조제1항)

- 동 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은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충분히 고려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¹⁾ 및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항²⁾의 규정을 적용한 것이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1) 양성평등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니하도록' 하는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³⁾을 일부 반영한 것임

- 다만, 위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와 다르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을 충분히 고려한다'라는 포괄적인 의미의 개정안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과 같은 구체적인 개정안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위원회 당연직 규모 및 구성 변경(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 동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은 행정1부시장이 맡는 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 수를 "8명"에서 "6명"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것임
- 위원회는 지역물류체계 효율화 등 중요 정책 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 기능을 수행하며 현재 18명의 위원 중 당연직은 시장을 포함한 8명, 위촉직은 10명으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⁴⁾에 따르면 당연직은 물류 관련 3급 이상 공무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음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및 반영계획서 제출 안내-물류정책과 31083('22.11.02.)

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

1. 관할 및 인접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
2. 해당 시·도의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참고: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현황

구 분	계	학계	업계	시의원	당연직
물류정책위원회	18명	5명(여성 1)	4명(여성 2)	1명(여성 1)	8명

※ 당연직(8): 위원장(시장), 부위원장(행정1부시장), 도시교통실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공급기획관, 교통기획관, 환경기획관, 정책기획관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를 제외한 14개 타 광역지자체⁵⁾ 중 9개(64%) 위원회가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운영하고 있고 당연직 위원수는 평균 5.3명인 반면 서울시는 8명으로 월등히 높음을 감안할 때 당연직 위

5) 광역지자체 조례상 위원 구성현황

연번	구분	위원장 (부위원장)	조례상 당연직		위촉직
			인원(명)	구 성	
1	서울	시장 (행정1부시장)	8	도시교통실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공급기획관, 교통기획관 환경기획관, 정책기획관	물류전문가·시의원 자치구청장
2	강원	도지사 (경제부지사)	5	농정국장, 경제진흥국장 건설교통국장	물류전문가·시민단체 시장·군수
3	경기	도지사 (행정2부지사)	6	기획조정실장, 경제실장 환경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물류전문가·도의원 시민단체 시장·군수·구청장
4	경북	도지사 (경제부지사)	6	일자리경제실장, 농축산유통국장 건설도시국장, 해양수산국장	물류전문가·의회추천인 시장·군수·구청장 시민단체
5	광주	시장 (호선)	4	경제정책·도시계획 교통정책 실국장	물류전문가 자치구청장
6	대구	시장 (호선)	5	교통·경제 도시계획·환경국장	물류전문가 시장·군수·구청장 민간단체
7	대전	시장 (호선)	5	기획조정실장, 경제과학국장, 교통건설국장, 도시주택국장	물류전문가·시의원 시장·군수·구청장
8	부산	시장 (행정부시장)	6	위원장 위촉	물류전문가 시장·군수·구청장
9	세종	시장 (호선)	5	기획조정실장, 경제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물류전문가·시의원
10	울산	시장 (호선)	3	업무연관 3급이상 공무원	물류전문가 시장·군수·구청장
11	인천	시장 (호선)	6	경제산업본부장, 교통건설국장 해양항공국장, 도시계획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물류전문가·시의원 시민단체
12	전남	도지사 (호선)	2	물류담당국장	물류전문가 시장·군수·구청장
13	전북	도지사 (x)	5	일자리경제본부장, 환경녹지국장 농축수산물국장, 건설교통국장	물류전문가·시의원 시민단체
14	제주	도지사 (호선)	7	교통·경제·환경·농축 도시계획·해양수산국장	물류전문가·도의원 물류관련학과 교수
15	충남	도지사 (호선)	6	물류담당 3급이상 공무원	물류전문가·도의원 시장·군수·구청장

원수는 축소하고 전문성을 지닌 위촉직을 확대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있어 전문성 확보 및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위원장의 직무 관련(안 제6조제2항)

- 동 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은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대행 규정을 현재 ‘위원장 부재시’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원장 부재에 따른 직무대행 규정 확대를 통해 위원회의 원활하고 신속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물류정책기본법」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6)에 따라 ‘시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맡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원장 직무 대행 범위를 확대할 경우 위원회 운영이 유명무실화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임

6)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주택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교통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정책기획관”을 “주택공급기획관, 교통기획관, 경제일자리기획관”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제2항 중 “없는 때에는 그”를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로, “없는 때에는 위원장”을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u>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u></p> <p>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u></p> <p>1. <u>도시교통실장, 도시계획국장, 주택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교통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 정책기획관</u></p> <p>2. (생략)</p> <p>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략)</p> <p>② <u>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u></p>	<p>제3조(구성) ① ----- ----- -----</p> <p>--. <u>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u></p> <p>② <u>위원장은 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③ ----- ---</p> <p>1. ----- <u>주택공급기획관, 교통기획관, 경제일자리기획관</u></p> <p>2. (현행과 같음)</p> <p>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없거나</u> <u>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u> ----- -----</p>

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